



**부속서 가**  
**원산지 증명서**  
**캐나다-한국 자유무역협정**  
(작성요령은 뒷면에 기재)

인쇄체로 쓰거나 타자로 작성한다.

1. 수출자 이름 및 주소: 전화:   팩스: 이메일: 참조번호:	2. 포괄증명기간: 연도 월 일 부터   연도 월 일 까지 부터:    까지:					
3. 생산자 이름 및 주소: 전화:    팩스: 이메일: 참조번호:	4. 수입자 이름 및 주소: 전화:    팩스: 이메일:					
5. 물품명세	6. HS품목번호	7. 특혜기준	8. 생산자	9. 가치평가	10. 원산지 국가	
본인은 다음을 보증한다. - 이 문서상 정보는 사실이고 정확하며, 기재된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. 이 문서상이나 이 문서와 관련하여 어떠한 허위진술이나 중대한 누락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확인한다. - 본인은 이 증명서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문서를 보관하며,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제출할 뿐 아니라, 이 증명서의 정확성이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변동사항에 대해서 이 증명서를 받은 모든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에 동의한다. - 이 상품은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이 원산지이며, 캐나다-한국 자유무역협정의 이 상품에 관한 원산지 요건을 충족한다. - 이 증명서는 모든 첨부물을 포함하여, ____ 쪽으로 구성된다.						
11. 서명권자의 서명:			회사:			
이름:			직위:			



연도 월 일 날짜:	전화:      팩스:
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

**<원산지 증명서 작성요령>**

특혜관세대우 획득의 목적상, 수출자는 이 문서를 명료하고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하며, 수입자는 신고시에 이 문서를 소지하여야 한다. 이 문서는 또한 수출자가 사용할 목적으로 생산자가 자발적으로 작성할 수 있다. 인쇄체로 쓰거나 타자로 기재한다. 추가 기재가 필요할 경우, 별지를 사용한다.

- 1      란: 수출자의 법적 이름, 주소(도시 및 국가를 포함한다), 전화번호, 팩스번호, 이메일 주소 및 참조번호(선택사항)를 기재한다.
- 2      란: 이 증명서가 최장 12개월(포괄증명기간)의 특정기간 동안 캐나다 또는 한국으로 수입되는 제5란에 기술된 바와 같은 동일 상품의 복수선적을 다룰 경우, 이 란을 작성한다. “부터”는 증명서가 포괄증명서의 적용을 받는 상품에 적용 가능하게 되는 날이다(이 날은 증명서가 서명된 날보다 빠를 수 있다). “까지”는 포괄증명기간이 만료되는 날이다. 이 증명서를 근거로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한 상품의 수입은 이러한 날짜 사이에 발생해야 한다.
- 3      란: 생산자가 1명인 경우에는, 그 생산자의 법적 이름, 주소(도시 및 국가를 포함한다), 전화번호, 팩스번호, 이메일 주소 및 참조번호(선택사항)를 기재한다. 두 명 이상의 생산자가 증명서에 포함되는 경우, “다수”로 기재하고 5란에 기술된 상품(들)과 상호 참조된 모든 생산자의 법적 이름, 주소(도시 및 국가를 포함한다), 전화번호, 팩스번호, 이메일 주소 및 참조번호(선택사항)를 포함하여 모든 생산자의 목록을 첨부한다. 이 정보를 비밀로 하고자 하는 경우, “세관 요청시 제출가능”이라고 기재할 수 있다.
- 4      란: 수입자의 법적 이름, 주소(도시 및 국가를 포함한다), 전화번호, 팩스번호 및 이메일 주소를 기재한다.
- 5      란: 각 상품의 물품명세를 제공한다. 물품명세는 그 상품에 대한 송장의 물품명세와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(HS)의 물품명세를 연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세부사항을 포함해야 한다. 증명서가 상품의 단일선적 상품을 다루는 경우, 각 상품의 수량과 측정 단위(가능할 경우, 일련번호 포함), 그리고 상업 송장에 표시된 송장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. 이를 알 수 없는 경우, 배송주문번호, 구매주문번호 또는 그 상품을 구분할 수 있는 그 밖의 번호와 같은 다른 고유 참조번호를 기재한다.
- 6      란: 5란에 기술된 각 상품에 대해, HS 품목번호를 6단위까지 기재한다.
- 7      란: 5란에 기술된 각 상품에 대해, 아래 기준(A부터 D까지) 중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를 기재한다. 원산지 규정은 제3장(원산지 규정)과 부속서 3-가(품목별 원산지 규정)에 포함되어 있다. 주: 특혜관세대우 자격을 부여 받기 위하여, 각 상품은 아래 기준 중 최소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.

**특혜 기준**

- A      그 상품이 제3.2조(완전하게 획득)에 언급된 대로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“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전적으로 생산된” 경우. 주: 그 영역에서 상품을 구매하였다고 반드시 “완전하게 획득하거나 생산된” 경우로 간주되지는 아니한다. (참조: 제3.1조(원산지/상품) 및 제3.2조(완전하게 획득))
- B      그 상품이 원산지 재료로만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전적으로 생산된 경우. 이 기준 하에서 하나 이상의 재료는 제3.2조(완전하게 획득)에 규정된 대로 “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전적으로 생산된”의 정의에 해당하지 아니할 수 있다.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재료는 제3.1조가호1목, 2목 및 3목 규정을 충족시킴으로써 “원산지”로서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. (참조: 제3.1조가호1목, 2목, 및 3목 그리고 제3.3호(충분한 생산))
- C      그 상품이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전적으로 생산되고 부속서 3-가(품목별 원산지 규정)에 규정된, 그 세번에 적용되는 세부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. 이 규정은 세번변경기준 또는 세번변경기준과 가치평가기준을 포함할 수 있다. 그 상품은 또한 제3장(원산지 규정)의 그 밖의 모든 적용 가능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. (참조: 제3.1조나호)
- D      그 상품이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전적으로 생산되었으나 특정 비원산지 재료의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아, 부속서 3-가(품목별 원산지 규정)에 규정된 적용 가능한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제3.4조(가치평가)에 규정된 가치평가를 충족하는 경우. 이 기준은 다음의 경우에만 적용된다: 하나 이상의 비원산지 재료가 결합된 상품이, 그 상품과 그 비원산지 재료가 같은 소호 또는 소호로 더 이상 세분화되지 않는 호로 분류되어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. 주: 이 기준은 HS 제1류부터 제21류까지, 제39.01호부터 제39.15호까지 또는 제50류부터 제63류까지는 적용되지 아니한다. (참조: 제3.3조제2항)
- 8      란: 5란에 기술된 각 상품에 대해, 본인이 상품의 생산자인 경우 “예”를 기재한다. 본인이 그 상품의 생산자가 아닌 경우, 이 증명서가 근거로 하는 기준에 따라 “아니오”를 쓰고 (1), (2) 또는 (3)을 기재한다. (1) 그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본인의



지식, (2) 그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 자격을 갖추었다는 생산자의 서면진술서(원산지 증명서 제외)에 대한 본인의 신뢰, 또는 (3) 생산자가 수출자에게 자발적으로 제공한 상품에 대해 작성되고 서명된 증명서

9        란: 5란에 기술된 각 상품에 대해 상품이 가치평가의 대상이 된 경우, 그 가치평가가 순원가를 기초로 하는 경우 “NC” 또는 그 가치평가가 그 상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 가격을 기초로 하는 경우 “TV”라고 기재한다. 그 가치평가가 일정기간에 걸친 그 상품의 순원가에 기초하는 경우, 그 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(년/월/일)을 추가로 기재한다. (참조: 제3.4조(가치평가))

10        란: 원산지 국가의 이름을 기재한다. (한국으로 수출되는 모든 원산지 상품에 대하여는 “CA”를, 캐나다로 수출되는 모든 원산지 상품에 대하여는 “KR”을 기재한다)

11        란: 이 란은 수출자에 의해 작성, 서명되고 날짜를 기재해야 한다. 수출자의 사용을 목적으로 생산자가 증명서를 작성하는 경우, 생산자는 작성, 서명하고, 날짜를 기재해야 한다. 날짜는 이 증명서가 작성되고 서명된 날짜이어야 한다.